

영등포구의회
제175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회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3. 6. 4.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영등포구아동위원회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207호로 2013년 5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기존 조례에 아동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임무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아동위원의 인원을 조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함.

3. 주요내용

- 가. 아동위원회협의회 위원 구성 조정 및 자격기준 명시(안 제3조)
- 나.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사유 규정(안 제4조)
- 다. 위원의 임무와 협의회 회의사항 규정(안 제5조)
- 라. 위원의 수당지급 기준 마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14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자격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각 동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동위원을 동별 1명으로 조정하여 18명 이내로 규정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무와 수당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아동복지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위원의 역할은 관할구역 아동의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 등과 협력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1994. 12.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조례에서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자격 기준이나 임기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으로 협의회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함으로써 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 련 법 령

■ 아동복지법

제14조(아동위원)

-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 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 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